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김정숙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현대적 의미의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고 국내 외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원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2005년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과정 개발, 교재 개발 등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한 판단과 교원 양성도 민간 차원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담당해 온 것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부칙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 및 자격 부여 기준, 승급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상황과 한국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자 2010년 12월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

호)을 제정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 시행령과 2010년 개정 시행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2005년 제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중 한국어 교원 자격 관련 조항을 살펴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및 승급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2005년 제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2.1.1. 최초 자격 부여 기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 및 부칙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승급 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정 시행령에 나타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위 과정을 통하지 않아도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단기 과정을 마친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최초 자격 부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에는 심사를 거쳐 2급이나 3급 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주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2급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3급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하고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학교에 한국어 교육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시행령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해당 전공 교수의 확보가 어려워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자격 부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학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3급 자격을 부여하였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에 제시하였는데, 시험 범위에는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를 포함시켰고 시험 시간은 250분으로 정하였다.

셋째, 경과 조치에 관한 부칙을 두어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이전에 대학(원)의 해당 전공 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오랜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한국어 교원 2급이나 3급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영(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 영 시행 전에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1.2. 승급 기준

승급 자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그 특징은 교육 경력에 대한 요건 없이 이전 자격증 취득 후 경과된 연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에서 부설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에는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하여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갖춘 경우, 혹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5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2.2. 문제점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한국어 교원 자격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과 이 제도를 통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는 쪽 모두에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교원 자격 부여 기준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여 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내의 한국어 교육 상황이 다변화되어, 국내에서는 한국어로 이주해 온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수가 늘었고, 국외에서는 세종학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관과 교사가 생겨남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 한글학교 교원들에게서도 그들의 여건에 맞는 교원 자격 제도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를 실행하였다. 그중 2008년의 연구는 2010년에 이루어진 시행령 개정 및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 마련에 상당한 기초와 근거를 제공하였다. 2008년도의 연구 내용을 비롯해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급과 관련한 규정에 연수(年數)만 명시되어 있고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제정 시행령에는 2급 자격 취득자에게는 5년이 지나면 1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3급 자격 취득자에게는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2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육 경력과

무관하게 승급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3년이나 5년이라는 연수와 함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들이 연간 400시간 이상을 교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나 5년에 요구되는 교육 시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과 조치에 근거해 자격을 부여받은 일부 한국어 교원들에게는 승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영 시행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전공자나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2급이나 3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제13조의 승급 규정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승급에 필요한 소정의 조건을 갖춘다면 이들에게도 승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육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이 국내의 대학과 대학 부설 기관으로 제한되어 다수의 한국어 교육자가 경과 조치에 의한 3급 자격 획득이나 승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학이나 대학 부설 기관으로 제한한 것에는 체계적 교육 과정에 의해 탄탄히 운영되는 교육 기관에서 쌓은 경력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외 초·중등학교나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과 같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상당히 갖춘 교육 기관이 대학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국내외의 초·중등학교를 비롯해 일정 정도의 규모와 체계성을 갖춘 교육 기관-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다른 나라 정부가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 기관- 등에서의 교육 경력은 한국어 교원 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넷째,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별표를 보면 자격 부여와 관련해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조항이 나온다. 이렇듯 제정 시행령에는 자격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바가 많았다. 그런데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과목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 또한 매년 교과목명과 실제 교육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라 개별적인 확인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심의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제안된 것이 기관 인증제의 도입이다. 사전에 심사를 받아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학위 과정이나 단기 과정 출신자들의 경우는 취득 학점 확인 절차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방식이다.

다섯째,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학위 과정 출신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어학과와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학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학위 과정 출신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배경은 단기 양성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20시간의 교육으로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에서 송향근 외(2007)와 조현성 외(2008)에서 (가칭) '한국어지도사'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3.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10년 12월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2010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큰 틀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전의 시행령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수준에서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3급의 등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격 부여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보다 정밀해지고, 승급에 필요한 요건에 교육 시간이 추가되었으며,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 점을 비롯해 몇 가지 규정에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을 제정해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바뀐 자격 제도가 기존의 자격 제도와 달라진 대표적 예는 (1)~(5)와 같다. 아래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 (1) 자격 부여 대상자 상세화
- (2) 승급 요건의 강화
- (3)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확대
- (4)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어 능력 인증 결과 요구
- (5)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심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3.1. 자격 부여 대상자 상세화

이전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영 시행 이후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 1, 2, 3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 시행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는 부칙 제2조에 경과 조치를 두어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제13조 제1항에 이들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영 시행 이전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자나 입학자와 관련한 자격 부여 기준을 보다 상세화해, 취득 학점 수에 따라 2급이나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제정 시행령에서는 이들에게는 승급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여타 해당 등급 자격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허용되었다.

3.2. 승급 요건의 강화

2005년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승급의 조건으로 자격 취득 후 3년이나 5년 등의 필요 연수만을 제시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연수와 함께 교육 시간 수도 요구하고 있다.

제정 시행령에서는 학위 과정을 통해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어 교육 경력 3년 이상, 비학위 과정을 통해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게 2급 자격, 2급 자격자 중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게 1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개정안에서는 한국어 교원 1급 자격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어 교원 2급은 학위 과정 출신자의 경우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1,2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을 경우, 비학위 과정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3.3.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확대

한국어 교육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확대되었다.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13조(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등) 제2항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국내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국내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한국어 교육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 초·중·고등학교나 정부 기관 등에서 교육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들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변경된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3.4.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어 능력 인증 결과 요구

한국어 교육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면서 이들의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할 때 한국어 구사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13조 제1항에 ‘(한국어 교육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 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5.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심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제13조 제2항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또는 필수 이수 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을 심의하는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역할이 법령화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0년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을 제정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기준, 심사 횟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2000년대 들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매우 다양해졌다. 2010년에 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변화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도 한국어 교원 자격과 관련된 그동안의 담론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1. 비학위 과정을 통한 자격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도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비학위 과정의 경우 120시간 이상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120시간으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급 자격 부여 기준인 학부 45학점(720시간), 대학원 18학점(288시간, 학위 논문 별도)이나 3급 자격 부여 기준인 학부 21학점(336학점)과 비교할 때 120시간의 필수 이수 시간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크게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단기 교사 양성 과정의 특성상 교육 시간의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조현성 외(2008)에서 보이듯 많은 단기 교원 양성 과정의 강의가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비학위 과정 이수자에게 부여하는 3급 자격 제도 폐지의 근거는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한국어 교원 수요에 비해 학위 과정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의 수가 부족했다. 이에 주로 대학 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단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도 3급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교원의 수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러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해마다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대학(원) 전공 학과의 수는 2006년 40개소에서 2010년 5월 85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구분되는 준교원 자격 제도 마련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들이 수월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견해가 송향근 외(2007), 조현성 외(2008) 등에서 제안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원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2.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 영역 추가 및 필수 이수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 및 시간 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 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 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학,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시행령 별표에서 제시하는 영역은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의 5개 영역이다. 그런데 좋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교직 이론 및 교사론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한국 문화 영역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한국 문화를 문화 간 상호 이해의 차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학습자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한국 문화 영역을 문화 영역으로 설정해 한국 문화, 학습자 문화, 문화 비교 등의 과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필수 이수 학점으로 학부 전공의 경우 45학점, 부전공의 경우 21학점,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능력을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특히 21학점만 취득해도 되는 부전공의 경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3영역과 5영역의 과목을 합해 4과목만 취득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교육으로는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등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점 수(62학점(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교직 이론 14학점 이상, 교과 교육 4학점 이상, 교육 실습 2학점 이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학점 수이다.

4.3. 승급 요건에 보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교수/학습 이론이 발달하면서 한국어 교수 이론과 방법도 발달한다. 또한 학습자 변인과 교육 상황이 변화해 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된다.

그러나 일단 교원이 되어 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새로운 교육 이론을 배울 기회가 적어 이전에 배운 것을 자산으로 교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점차 새로운 교수 이론이나 방법론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승급을 하는 시점에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받는 재교육은 새로운 교수법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듣고도 교원이 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고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항 수 및 응시 시간 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학위 과정 출신자가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시험 문제 수가 지나치게 많고 시험 시간이 길다. 이 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의 총점은 300점(한국어학 90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30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150점, 한국 문화 30점)이고, 시험 시간은 250분으로 정해져 있다. 교안 작성을 제외한 전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다 보니 시험 시간을 고려한 적정 문항 수가 190문항 정도 되어 매회 190여 개의 문항(주관식 1문항 포함)으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회 중복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시험 시간도 길어 수험자에게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된다. 시험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문항 수를 정하고, 이에 맞게 시험 시간을 조정하여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맺는말

이상에서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비롯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2010년에 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변화의 큰 흐름은 시대적 요구와 한국어 교육 관련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국어 교원에 대한 수요와 요구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여 우수한 자격을 갖

준 한국어 교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2010. 12.): http://kteacher.korean.go.kr/sys/law_02.do
- 국립국어원(2010),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송향근·김정숙·박동호(2007),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국립국어원.
- 오광근·김유정·진대연(2009),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윤소영·조현성·이미혜·최은규(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국립국어원.
- 조현성·박영정·홍기원(2008),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